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4호).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제5호).
-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근거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II. 검토의견

1. 정의규정(안 제3조제14호)

안 제3조제14호에서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정의규정의 문구 중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의 경우 현행법 정의조항에 따른 ‘위해성’의 내용¹⁾과 일치하므로 간명한 규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u>화학물질저감 우수 제품</u> ”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u>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u>	제3조(정의) ----- ----- -----. 1. ~ 13. (개정안과 같음) 14. “ <u>화학물질저감 우수 제품</u> ”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u>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u>

2. 개정 부칙규정에 대한 적용례 추가(안 부칙 제2조 신설)

개정안에서는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면서, 살생물제품을 국내 판매·유통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제품승인의 기한을 “제품에 포함된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u><단서 신설></u>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 ----- -----. 1. ----- ----- ----- ----- ----- ----- ----- ----- -----. <u>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u>

부칙 개정의 입법 취지가 기업의 늦은 제품승인 신청 등으로 인한 평가 기간의 부족 및 제품승인 지연으로 인한 공중보건·방역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 승인 평가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²⁾ 개정 부칙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적용례를 추가함.

개 정 안	수정의견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위원 이 은 정)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조지연A·조지연B의원 대표발의】, 2025. 11.
 ○ 기업의 늦은 신청 등으로 인한 평가 기간의 부족 및 승인 지연으로 인한 공중보건·방역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 승인 평가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타당**